



수험소식 및 수험자료

2019년 제25회 법무사 2차시험 기출문제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민법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2016. 9. 1. 乙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1년 후에 갚기로 하였다.

甲은 2017. 9. 1. 가액이 2억 원 상당으로서 자신이 거주하는 X주택에 관하여 乙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乙은 같은 날 甲에게 ‘원금 및 이자 상환이 100% 이루어졌을 때 이 사건 가등기를 즉시 해제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으며, 견해 대립이 있을 경우 대법원 판례의 다수의견에 따른 것. 이상의 사실관계 및 아래의 각 설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실관계는 상정하지 않는다)

1. X주택에 관한 2017. 9. 1.자 가등기의 성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2.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乙은 2019. 9. 1. 현재 빌려준 돈을 甲으로부터 돌려받는 대신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를 원한다. 乙이 X주택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

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乙은 2019. 3. 1. X주택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甲은 X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로 하고 乙에게 차임으로 월 50만 원씩을 매월 1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차임을 지급하였다. 그 후 2019. 9. 1. 현재 X주택의 가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상승하자, 甲은 X주택에 관한 본등기 이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乙이 X주택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20점)
4.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甲은 2016. 2. 1. 丙 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X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甲, 채권자 丙 은행,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甲은 2017. 9. 1. 위와 같이 乙에게 X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 주면서, 2018. 9. 1.까지 乙에게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차용금 대신에 X주택을 乙에게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甲이 2018. 9. 1.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乙은 X주택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乙의 본등기의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문 2】

〈기본적 사실관계〉

乙은 2019. 1. 1. 그 소유인 Y토지 지상에 X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업자인 丙과 다음과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약정서
① 丙이 X건물을 건축하되, X건물의 건축허가 명목과 소유권보존등기 명목은 乙로 함
② 공사대금 1억 원은 乙이 완공된 X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함
③ 위 ②항의 경우, 丙이 공사를 위하여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노임지급을 지체한 경우, 乙은 丙에게 지급할 위 공사대금에서 지체노임 상당액을 공제하고, 乙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체된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丙은 건축공사를 시작하였고, X건물의 기둥, 외벽, 지붕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그 내부공사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 없음)

1.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乙은 Y토지와 X 건물을 甲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후 Y토지에 관해서는 그 등기를 甲에게 이전하였으나, X건물에 관해서는 건축허가 명목만을 甲으로 변경하였고 그 등기는 이전해 주지 못하였다. 한편 乙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A는 乙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자 그 이행을 요구하며 X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에 甲은 A를 피고로 하여 X건물의 인도를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소장의 청구취지를 작성하여 귀하에게

법률상담을 구한다. 甲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25점)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구 ○○대로 Y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X건물을 인도하라.

-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丙은 X건물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생기자, 2019. 2. 1. 乙로부터 변제기를 2019. 3. 1.로 하여 1억 원을 차용하였다. 丙은 위 변제기를 도과한 상태에서 2019. 4. 1. 공사를 완료하였고, X건물을 乙에게 인도하였다. 乙이 丙에게 위 대여금 1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자, 丙은 乙에 대한 1억 원의 공사대금채권과 위 대여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丙은 자금사정으로 자신이 고용하였던 근로자들에게 아직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丙의 상계주장은 타당한가? (15점)
-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丙은 X건물의 내부공사를 위하여 丁으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구입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丙이 공사를 완료하고 X건물을 乙에게 인도 한 후, 丙은 자신의 乙에 대한 1억 원의 공사대금채권 중 3천만 원을 丁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후 丁은 乙에게 위 공사대금 3천만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乙 역시 자력이 없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丁은 乙에게 민법 제666조에 의하여 X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乙은 X건물에 대하여 丁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乙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B는 乙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를 제기 하였다. 위 소송의 결론은 어떻게 예상되는 지 설명하시오. (10점)

형 법

【문 1】

甲은 乙의 허락 없이 마치 乙인 것처럼 가장 하여 乙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그와 관련된 대금은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후, 그에 따라 乙의 명의를 모용하여 A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1. 甲은 위와 같이 乙의 명의를 모용해 A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ARS 전화서비스를 통하여 B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다. 甲이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가 형법상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그 피해자는 누구인지 논하시오.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 (10점)
2. 甲은 위와 같이 乙의 명의를 모용해 A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丙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甲이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형법상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그 피해자는 누구인지 논하시오.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 (10점)

【문 2】

甲은 2019. 8. 1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단속을 하는 경

찰관 乙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에 乙은 순찰차를 타고 추격하여 甲의 차량을 따라잡은 후 순찰차에서 내려 甲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에 불응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乙이 서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乙의 오른쪽 무릎을 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乙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검사는 甲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와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하였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특별법 위반죄는 논외로 하고, 다툼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 (15점)

【문 3】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甲은 2019. 7. 10. 아파트 관리소장인 乙의 외부특별감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실을 방문하여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乙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라고 말하였고, 이에 乙이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을 하느냐”고 말하자, 다시 乙에게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나?”라고 말하였다. 당시 관리소장실 안에는 甲과 乙만 있었으나 관리소장실의 문이 열려 있었고, 관리소장실 밖의 관리사무소에는 직원 4~5명이 업무를 하고 있었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 (15점)

형사소송법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상습으로 2016. 10. 5.부터 2017. 10. 25.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18장을 절취하고, 같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기에서 4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11,500,000원을 절취하였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으며,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고려하지 말 것)

1.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甲의 위 행위 중 2017. 10. 25.의 범행에 대하여만 단순절도죄(형법 제329조)로 2018. 3. 5. 공소가 제기되어, 2018. 7. 3. 피고인 甲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8. 7. 12. 확정되었다. 이후 2018. 9. 3. 피고인 甲의 나머지 범행들 중 절도범행 전체에 대하여 형법상 상습절도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1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관련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결의 입장과 논거를 포함시킬 것. 만약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린 경우 다수의견에 따를 것) (10점)
2.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피고인 甲은 위 범죄 행위 이전에 2007. 12. 10. A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 5. B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위의 2016. 1. 5. 선고 판결은 2013년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죄 등에 관하여 선고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판결임]. 피고인 甲에 대하여는 위 범죄행위 이전에

저지른 범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재심판결도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 甲은 상습으로 2003. 2. 1.부터 2003. 8. 20.까지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는 범 죄사실로 2003. 10.20. B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3. 12.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적용되었던 법률조항인 구 특정범죄가중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 16 등 전원재판부 결정)이 나오자, 피고인 甲은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로 공소장이 변경된 다음 2016. 8. 10.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6. 12. 1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12. 20. 위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재심판결'이라 한다).

위의 판결들과 관련하여 피고인 甲은 2016. 9. 5.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11. 20. 피고인 甲의 2016. 10. 5.부터 2017. 10. 25.까지 위의 절취의 범행들에 관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확정된 이 사건 제1재심판결의 기판력이 위 공소사실 중 제1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한 2016. 10. 5.자 각 절도 범죄에 미치는지 설명하시오.

(관련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결의 입장과 논거를 포함시킬 것.

만약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린 경우 다수의 견에 따른 것) (10점)

【문 2】

甲, 乙은 한약사로서 A와 공모하여 한약사 자격이 없는 A가 한약국을 개설하여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할 수 있게 하였다. 甲은 자신이 개설한 한약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조제방법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하고, 전화 상담만을 받고 고객들에게 이를 택배로 판매하였다. 위 각 사실을 공소사실로 하여 甲, 乙에 대하여 각 약사법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제1심은 피고인 甲, 乙(이하 甲, 乙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인들’이라 한다)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각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乙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 甲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甲에 대해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 乙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점을, 피고인 乙은 이에 덧붙여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였다. 위와 같은 상고이유들이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관련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결의 입장과 논거를 포함시킬 것. 만약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린 경우 다수의 견에 따른 것) (10점)

【문 3】

공소장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피고인 甲에 대하여, 피고인 甲은 A, B와 합동하여 2019. 8. 8. 01:00경 피해자 X를 둘러싼 다음 돈을 내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피해자 X의 가슴과 얼굴을 구타하여 항거불능케 하고 피해자 X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특수강도죄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甲과 A, B가 합동하여 피해자 X에게 가한 폭행이 재물을 제공케 할 수단으로서 피해자를 외포케함에 그치고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특수강도죄가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처단하는 유죄판결을 내렸다. 위 유죄판결이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관련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결의 입장과 논거를 포함시킬 것. 만약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린 경우 다수의견에 따른 것) (5점)
2. 피고인 甲에 대하여, 피고인 甲은 피해자 A를 강제추행하여 외음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는 강제추행치상죄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 A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었다거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甲을 강제추행죄로 처단하는 유죄판결을 내렸다. 위 유죄판결이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관련 법리에 관한 대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결의 입장과 논거를 포함시킬 것. 만약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린 경우 다수의견에 따를 것) (5점)

3. 피고인 甲에 대하여, 피고인 甲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A의 집에서 동거 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 A가 '술 사먹을 돈은 있고 애들 학비 줄 돈은 없느냐'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배를 걷어찬 후 피해자 A의 양쪽 손과 발목을 테이프로 묶은 후 피해자 A를 베란다로 끌고 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난간 밖으로 밀어 12층에서 떨어지게 하여 살해하였다는 살인죄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인 甲은 피해자 A를 때리고 양쪽 손과 발목을 테이프로 묶었다는 등 살인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피고인 甲이 피해자 A를 베란다로 끌고 가 떨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피해자 A를 베란다로 끌고 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난간 밖으로 밀어 12층에서 떨어지게 하여 살해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관련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결의 입장과 논거를 포함시킬 것)

가. 1심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실에 포함된 더 가벼운 범죄사실인 폭행이나 상해, 체포·감금 등의 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점)

나. 1심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폭행이나 상해, 체포·감금 등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 그 적법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점)

민사소송법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乙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9.2. 1. 乙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각 문항에서 추가로 제시되는 사실관계는 서로 무관하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를 것)

-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甲은 乙의 인장이 날인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차용증상의 인영이 자신의 것은 맞지만, 자신은 백지에 인장을 날인하여 주었을 뿐이고 누가 추후 그 내용을 기재하였는지는 모르겠다.'라고만 진술하고, 그 구체적인 경위 등에 관하여 추가로 설명하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용증(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결론과 그 이유를 약술하시오. (10점)
-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乙은 甲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약정금 채권(이하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과 1억 원의 투자금반환 채권(이하 '투자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약정금 채권과 투자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甲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중 6,000만 원 부분만

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1억 원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다음, 乙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① 약정금 채권 4,00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은 모두 받아들이고, ② 투자금 채권 1억 원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은 그 원인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甲과 乙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 판결로 乙의 甲에 대한 투자금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의 기판력이 발생한 금액 범위를 밝히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15점)

3.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제1심 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주소지와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된 주민등록 주소지로 소장 부분을 송달하였으나 모두 이사불명을 이유로 乙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분,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한 후 변론을 진행하였다. 그 후 제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제1심 판결 정보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9. 6. 1. 乙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乙은 이 사건 대여금 청구의 소제기 전인 2019. 1. 15. 이미 사망하였고, 乙의 상속인 丙은 2019. 7. 1.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丙의 추후보완 항소와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결론과 그 이유를 약술하시오. (10점)
4.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의 채권자인 丁은 甲에 대한 1억 원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채권에 기하여 甲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9. 5. 10. 乙에게 송달되었다.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丁은 2019. 5. 20. 乙을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별개의 소를 제기하였다. 丁이 제기한 추심금 지급의 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결론과 그 이유를 약술하시오. (15점)

【문 2】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자신의 노트북을 乙에게 100만 원에 팔기로 계약하였는데, 乙은 현재 돈이 없으니 일단 노트북을 인도해 주면 일주일 내 노트북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하여 甲은 乙의 말을 믿고 노트북을 乙에게 인도해 주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서도 乙이 노트북 매매대금을 주지 않자, 甲은 乙을 피고로 하여 노트북 매매대금 100만 원을 구하는 매매대금청구(이하 '주위적 청구'라고 한다)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위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대비하여 인도받은 노트북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청구(이하 '예비적 청구'라고 한다)도 함께 제기하였다(부대항소는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

1.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제1심 법원이 甲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甲이 기각된 주위적 청구와 판단하지 않은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甲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으며, 甲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경우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재판의 누락인지, 판단 누락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3점), 甲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7점)를 기재하시오.

2.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제1심 법원이 甲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자, 乙만이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오히려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경우 항소심 법원은 어떠한 판결(항소각하, 항소기각, 항소인용, 항소일부인용 등)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5점)
3.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제1심 법원이 甲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자, 乙만이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乙이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주위적 청구를 인낙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결론 및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5점)

부동산등기법

【문 1】

소유명의인이 갑(甲)인 X토지에 대하여 을(乙)을 가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병(丙)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금 3억 원) 및 정(丁)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금 3억 원)가 순차

로 마쳐졌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각 설문은 상호관련성 없음)

1. 소유명의인 갑(甲)이 교회인 경우 갑(甲)과 을(乙)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 시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2. 을(乙)이 갑(甲)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무(戊)에게 양도하고 을(乙)과 무(戊)가 가등기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등기신청이 허용되는 이유와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병(丙)이 A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자신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갑(甲)과 전세금을 금 2억 원으로 감액하는 전세권변경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여부에 따른 등기실행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4. 갑(甲)이 사망한 이후 을(乙)이 가등기된 권리 중 2분의 1지분에 대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설명하고, 등기관이 그 신청에 따라 본등기실행 시 병(丙)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와 정(丁)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처리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문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